

제2026-37호 2026년 4월 30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26호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고시(3차)
- 여수시 고시 제2026-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28호 202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고시 제2026-129호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39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충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공구)]
- 여수시 공고 제2026-140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묘도동 읍동-온동마을 도로개선]
- 여수시 공고 제2026-1412호 불법 주차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15호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신청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18호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20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결과 공고(여수 소재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1423호 2026년 상반기 방치선박 제거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24호 도로지정 공고 [삼산면 서도리 1322번지]
- 여수시 공고 제2026-1428호 돌산 평사지구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최 결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29호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흑산천)
- 여수시 공고 제2026-1432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38호 도로지정(변경)공고(화정면백야리200번지)
- 여수시 공고 제2026-1449호 불법 삼중차량 어구 철거 보관 공시송달 공고

읍·면·동

-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 고시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4. 28.

여 수 시 장

1. 지정위치: 소라면 대포리 산170, 소라면 대포리 산196, 소라면 대포리 산189-1, 소라면 대포리 산189
2. 지정면적: 439m²
3. 지정사유: 국토 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4. 지정내역: 불임참조.
5. 지정사업의 종류: 계류보전
6. 지정연월일: 2026. 4.
7. 행위제한: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내역(3차) 1부.

2. 2026년 여수시 사방지 지정도면(3차)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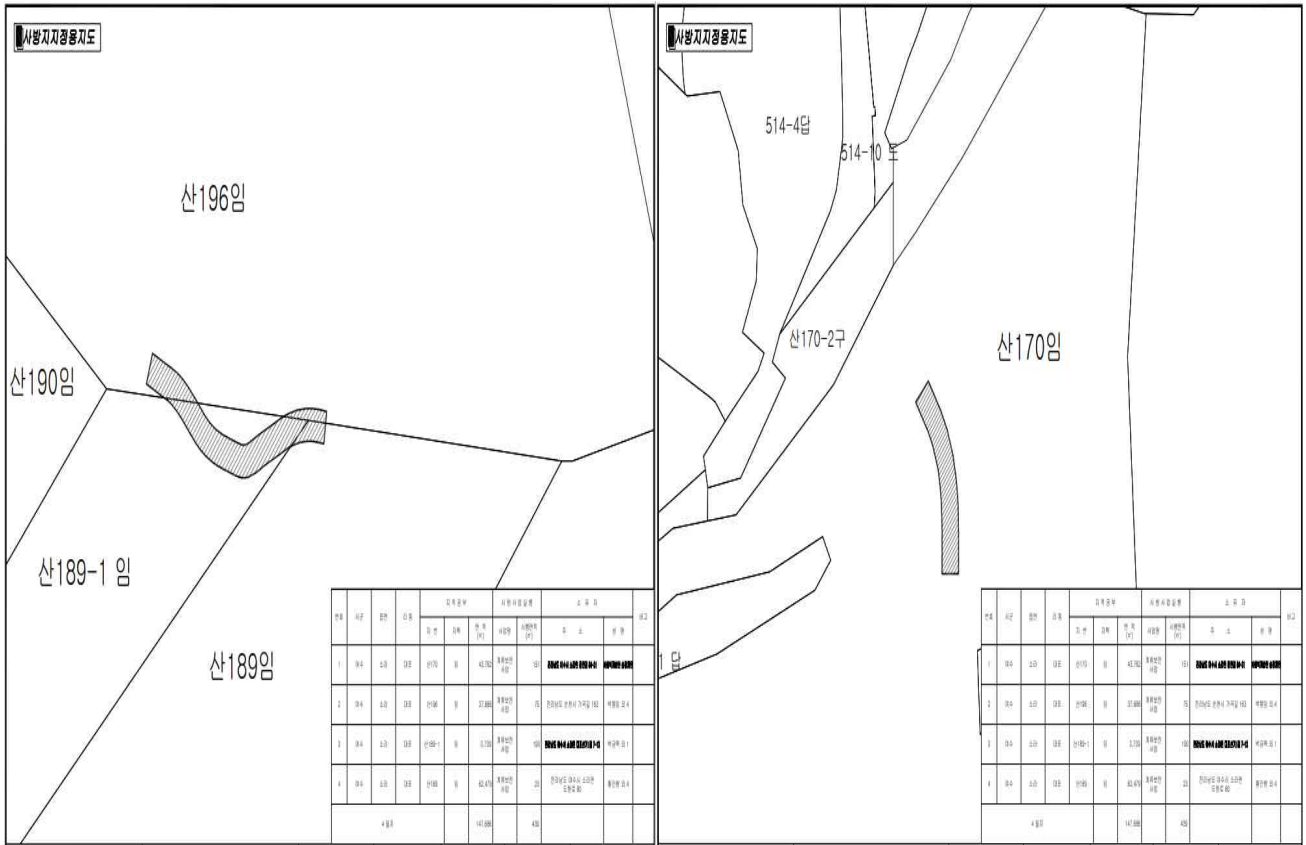
사방지 지정 내역(신규)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	지정면적 (㎡)	사업의 종류	도면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계					147,686.0	439.0		
여주시	소라면	대포리	산170	임야	43,782	151.0	2026년 계류보전 조성	2026-04
			산196	임야	37,686.0	75.0		
			산189-1	임야	3,739.0	190.0		
			산189	임야	62,479.0	23.0		
소계					147,686.0	439.0		

사방지 지정 내역(변경)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	지정면적 (㎡)	변경면적 (㎡)	도면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여주시	소라면	덕양리	1421-25	구거	9,294.0	263	0 (△263)	2026-02
소계					9,294.0	263	0 (△263)	(대상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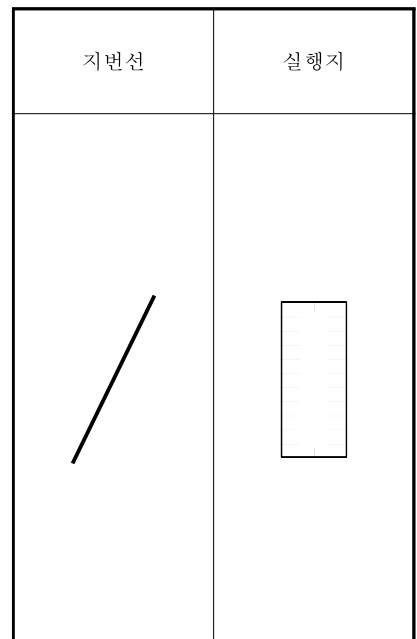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본 도면은 사방지 구역 설정을 위한 도면으로 측량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사업실행토지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라면 대포리	산170	임	43,782	151
소라면 대포리	산196	임	37,686	75
소라면 대포리	산189-1	임	3,739	190
소라면 대포리	산189	임	62,479	23
계	4필지		147,686	439



여수시 고시 제2026-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승인 번호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일	시 행 자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변경사항(공사기간)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2025-4	'26.4.28.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864-6번지 일원	화산항 어촌뉴딜 300 사업	'25.3.18. ~ '25.12.31.	'25.3.18. ~ '26.5.15.

2026. 4. 28.

여 수 시 장

2026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2026년도 여수시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을 위하여 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응답·주소 및 거소불분명·기타 반송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28.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2. 대 상 지: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189번지
3. 사용내용: 2026년 사방사업을 위한 장비 진입로,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떼심기, 입목, 토석, 풀 등의 채취 등 산사태 예방 공사에 포함된 공종 일체
4. 사업기간: 2026. 5. ~ 2026. 7. (또는 사업종료 시)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발 주 처: 여수시청
7. 공고내용: 2026년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통지 공고
8. 기타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조사

필지별 조사											
□ 여주시	토지소재지				지 목	지 력(㎡)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사업의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계			1필지			62,479.0	23.0				
여주시	소리면	대포리	산189	임야		62,479.0	23.0	이○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176번길 62	2026년 계류보전	공유자
								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3길 12		공유자
소계						62,479.0	23.0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6. 4. 30.

여 수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연 장 기 간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6.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 (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 061-659-3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30.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충무동 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1180) 사업
 - 나. 명 칭: 충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공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673m²
 - 나. 규 모 : L=80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5.12.18. ~ 202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공람기간: 2026. 4.30. ~ 2026. 5.14.(14일간)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17필지)				980	673							
1	군자	224-*	구거	101	101	국토교통부	국유지					
2	총무	16-*	구거	40	40	국토교통부	국유지					
3	총무	4-*	대지	51	51	장*자	여주시 소호*길 3*, 10*동 40*호(소*동, 프레***)					
						장*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 31*동 80*호(잠실동, 트리**)					
						장*환	전남 여주시 박람회길 6*, 10*동 110*호(덕*동, 엑스포***단지)					
4	총무	4-*	대지	6	6	장*자	여주시 소호*길 3*, 10*동 40*호(소*동, 프레***)					
						장*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 31*동 80*호(잠실동, 트리**)					
						장*환	전남 여주시 박람회길 6*, 10*동 110*호(덕*동, 엑스포***단지)					
5	총무	1-*	대지	4	4	이*신	여주시 군자*길*(총무동)					
6	기정	군자	198-*	대지	59	59	배*천	여주시 군자*길 10-*(군자동)				
	변경	군자	198-*	대지	59	59	배*천	여주시 군자*길 10-*(군자동)				지번정정
7	군자	198-*	대지	25	25	우*선	여주시 여서로 18*, 60*동 101*호(여서동, 부***트)					
8	기정	군자	196-*	대지	69	69	마*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동 178-1*				
	변경	군자	196-*	대지	69	69	마*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동 178-1*	신*찬	여주시 군자동 19*	근저당	
9	군자	194-2*	전	44	44	여수시	공유지					
10	군자	199-*	대지	16	16	박*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번길 5*, *동 480*호(부전동, 더샵***타)					
11	군자	184-*	도로	188	9	국토교통부	국유지					
12	총무	630-1*	도로	6	6	국토교통부	국유지					
13	총무	630-1*	도로	23	23	국토교통부	국유지					
14	군자	181-*	대지	106	106	박*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번길 5*, *동 480*호(부전동, 더샵***타)					
15	군자	181-*	대지	1	1	박*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번길 5*, *동 480*호(부전동, 더샵***타)					
16	군자	194-2*	대지	45	45	여수시	공유지					
17	군자	194-2*	전	68	68	최*정	서울특별시 용*구 이*로 3*, *동 60*호(이촌동, 시***트)					
						최*주	서울특별시 동*구 장승*로 *길 1*, 30*호(상*동)					
						최*애	서울특별시 동*구 장승*로 *길 2-1*(상*동)					

○ 지장물조사(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충무	*대	가로등		1EA	가로등	여수시						
2	충무	1-*대 1-*대	가 옥	블록 / 슬래브	2동	41.5㎡ 가 옥	이*신	여수시 군자*길 *(충*동)					
3	군자	2*4-*구	제수변		1EA	제수변	여수시						
4	군자	2*4-*구	통신주		1EA	통신주	K*						
5	군자	1*8-*대 1*8-*대	가 옥	블록 / 스투트	3동	71.5㎡ 가 옥	배*천	여수시 군자*길 1*-* (군*동)					
6	군자	19*대 1*8-*대	가 옥	블록 / 스투트	2동	75.5㎡ 가 옥	우*선	여수시 여*로 18* 6* *동 10* *호 (여서동, 부* * * 트)					
7	기정	군자	19*대 19*-*대	가 옥	블록 / 스투트	3동	71.0㎡ 가 옥	마*남	부산광역시 금*구 구*동 17* -1*				
	변경	군자	19*대 19*-*대	가 옥	블록 / 스투트	3동	71.0㎡ 가 옥	불분명	불 분 명	재산세 납부대상 자	신*호	서울특별시 송*구 정의로*길 1* 10*동 80*호 여수시 군자*길 1*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 부존재
8	충무	6*0-1*도	가로등		1EA	가로등	여수시						
9	군자	1*4-2*전	전주		1EA	전 주	K*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30.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묘도동 산39-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353) 사업
 - 나. 명 칭: 묘도동 읍동~온동마을 도로개선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15,795m²
 - 나. 규 모 : L=1,072m, B=8~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8.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람기간: 2026. 4.30. ~ 2026. 5.14.(14일간)
8.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103,587	15,795									
1	묘도동	92-*	전	3,121	1,066	여천군 삼*읍 묘*리 101-*	김*주				
2	묘도동	92-*	전	1,478	450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묘도동)	김*욱				
3	묘도동	9*	답	430	3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로 2*, 20*동 240*호(웅천동,포*나여수웅* 단지)	김*경	근저 당권	여**업 협**합	전남 여수00 학동*길 1*(학동)(안**점)	
4	묘도동	9*	전	939	191	경상남도 김해시 장*번 올하*로5*번길 1*	김*관	근저 당권	여**업 협**합	전남 여수시*길 1*(학동)(묘**점)	
5	묘도동	9*	전	876	563	울산 울주군 온*읍 덕*리 132*-*동*아파트 10*-120*	김*근				
6	묘도동	101-*	임	7,021	1,131	여천군 *일읍 묘*리 10*	정*중				
7	묘도동	101-*	임	661	134	여천군 *일읍 묘*리 10*	정*중				
8	묘도동	101-1*	임	3,076	101	대구광역시 달*구 도*로 4*, 61*동 20*호(도*동,별*마을)	추*배				1653076
						부산광역시 서구 까*고*로 2*0(토성동*가)	이*준				33130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공*로 4*, 10*동 170*호(가야동, 가야*도*라빌)	박*권	근저 당권	부**너지 주**사	부산광역시 북구 금**로 9*,*층(덕천동)	3313076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번가길 1*, *동 30*호(연산동, 대**라)	진*미				1653076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길 11-*(옥포동)	박*관				3313076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길 11-*(옥포동)	황*난				331307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13*번길 *, 10*동 80*호(외동, 쌍**닷흠)	김*용				4313076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13*, 50*동 80*호(평*동, 선*아*트)	오*석				165307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곡로1*번길 14(부곡동)	문*화				1653076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로5*번길 1*, *동 41*호 (괴정동, 협진**양*파트)	나*숙				165307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회*길 21-*, 40*호	나*재				463076						
9	묘도동	689-*	전	2,397	859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1*(묘도동)	김*조	근저 당권 지상권	여**업 협**합	전남 여수시 학동 4*	

10	묘도동	689-*	전	3,549	652	여천군 삼일읍 묘*리 11*	박*호					
11	묘도동	689-*	임	1,930	109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로 1*0, *동 40*호(상동,청구***파트)	전*연					284,980
						부산광역시 북구 산*로 8*, 10*동 80*호(화명동, 그****파트)	박*준					165,49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141, 10*동 30*호(명지동, 명*협***레)	김*순					55,490
						울산광역시 동구 방*진순*도로 99*, 10*동 1510호(서부동, 현대****아파트)	김*훈					165,490
						경상남도 김해시 분*로13*번길 *, 10*동 80*호(외동, 쌍****홈)	김*용					297,490
						부산광역시 북구 학*로1*번길 3*, 10*동 180*호(화명동, 수****운)	김*애					47,4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로15*번가길 *, *동 30*호(범천동, 삼****라)	전*훈					165,490
						울산광역시 남구 대*로 2*, 21*동 150*호(신정동, 신****아파트)	김*자					99,4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로 15*, *동 40*호(가야동, 해****트)	권*정					179,49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로11*번길 7* (수안동)	김*숙					110,490						
12	묘도동	689-*	임	826	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로 26*, *동 140*호(연산동,경****트)	김*녀					
13	묘도동	691-*	대	660	32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길 14*(묘도동)	김*엽					462,680
						전라북도 군산시 관*길 4*, 30*호(미룡동, 예****립)	박*훈	근저당권	여**용 협**합	전남 여수시 여*로 15*-*(여서동)	198,680	
14	묘도동	691-*	전	2,244	601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길 7*-1*(고소동)	주*자					
15	묘도동	69*	답	2,129	154	전라남도 여수시 미*로 70-*, 10*동 30*호(미평동, 미평해광상****즈파크)	김*주					
16	묘도동	694-*	답	208	3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30-*(묘도동)	이*형					
17	묘도동	695-*	답	139	5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길 11*(묘도동)	장*량					
18	묘도동	695-*	임	479	236	여수시 묘도동 19*	김*안					
19	묘도동	736-*	임	3,014	415	여천시 신기동 13* 부영**트 31*동 100*호	장*철					
20	묘도동	산39-*	도	129	37		국(국토교통부)					
21	묘도동	산39-*	도	2,756	1,783	여수시 묘도동 164-*	여*시묘*동은 동**을회					

22	묘도동	산39-*	임	1,653	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2* 수***타운 11*-60*	구*순				
23	묘도동	산39-1*	임	3,051	376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리 502-*성**파트 2-80*	김*향				16330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로49*번*길 8-*(광안동)	배*여			331305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311-12*송**라*-30*	주*자			3313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88*남***트 10*-30*	최*래			41530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60-27*유***츠-10*	김*임			331305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69-*엄***파트 10*-70*	심*훈			2343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85-1*	남*욱			3313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88*삼***트 105-50*	안*			8430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 오륙도 에***뷰 아파트 111-40*	강*래			33130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01* 선***트 304-80*	김*욱			163305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424-1*	조*순			163305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48-*모***트*-30*	최*영			163305							
24	묘도동	산39-1*	임	5,088	623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5* 신***리에 11*-160*	이*화				40643 13,223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7* 우**유 10*-20*	백*선				33083 13,223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8* 웅***트 10*-120*	이*수				33084 13,223
25	묘도동	산4*	임	7,140	1,575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172-*	남**씨사*파 묘**문화 (대표자: 방*준)				
26	묘도동	산46-*	임	7,706	10	광주 북구 문흥동 986-*	김*관				
27	묘도동	산47-*	임	11,570	1,2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로 30*, 9*동 11*9호 (압*정동, 현대아파트)	유*규				
28	묘도동	산47-*	임	1,111	11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9 호반**시빌 2*9-20*	정*대				
29	묘도동	산47-*	임	3,529	70	여천시 묘도동 1709-*	인**씨남*파 묘**중(대표 자:장*순)				
30	묘도동	산47-1*	임	3,886	556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23-*(묘도동)	조*남				1/1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 165-*(태인동)	김*심				1/11
						전라남도 광양시 중*로 21*, 10*동 100*호 (중동, 남**크)	김*주				1/11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묘도동)	김*심				1/11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2*5번길 64-1*	김*애				1/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로1*길 4*(면목동)	김*주				1/11
						전라남도 광양시 중*로 21*, 103동 100*호 (중동, 남**크)	김*주				1/11

						광주광역시 동구 남*로 55*, 101동 110*호(소태동, 은세* * * * *옴아파트)	김*전				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로 22*, 21*동 20*호 (화정동, 달* * * * *을)	김*란				1/1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강* * * *길 22-3*, 10*동 20*호 (영* * * *아파트)	김*주				1/11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길*, 50*동 51*호(중동, 동* * *파트)	김*주				1/11
31	묘도동	산47-1*	임	7,487	531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5-*	이*행				2,644/ 7,487
						광주광역시 서구 대* * *로48*번길 26-*(농성동)	서*석				4,843/ 7,487
32	묘도동	산47-1*	임	8,264	1,289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 현* * *트 205-60*	박*준				
33	묘도동	산47-2*	임	1,653	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1* * *번길 1*, 10*동 30*호(덕천동,삼* * *코아)	신*순				165/ 1,653
						부산광역시 북구 모*재로14*번길 2*, 20*호(구포동, 경* * *아파트)	고*진				165/ 1,65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로 1*, 10*동 160*호(거제동, 쌍* * *트)	박*자				165/ 1,653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5*번길 *(사직동)	조*숙				165/ 1,653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3*번길 4*, 20*호(은천동, 남* * 크빌)	정*순				496.5/ 1,653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 40*동 210*호(학장동, 무* * *트)	강*순				496.5/ 1,653
34	묘도동	산47-2*	임	1,653	3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로 15*,10*동 100*호(북가좌동,삼* * *트)	김*준				
35	묘도동	산68-*	임	1,734	237	전라남도 순천시 감사* *길 38-*(동외동)	박*순				

○ 지장물조사

■ 전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주번호	소관	수량	비고
1	묘도동	산39-4	도	273	한국*력	1	
2	묘도동	산39-4	도	272	한국*력	1	
3	묘도동	산39-4	도	271	한국*력	1	
4	묘도동	산39-4	도	270	한국*력	1	
5	묘도동	101-6	임	270H1	한국*력	1	
6	묘도동	101-6	임	269H1	한국*력	1	
7	묘도동	산43	임	267	한국*력	1	
8	묘도동	산47-19	임	266	한국*력	1	
9	묘도동	92-4	전	261	한국*력	1	
10	묘도동	산47-22	임	260	한국*력	1	
11	묘도동	산47-22	임	미부착	한국*력	1	
12	묘도동	736-1	임	259	한국*력	1	
13	묘도동	689-2	전	259H1	한국*력	1	
14	묘도동	689-4	임	258	한국*력	1	
15	묘도동	691-6	전	256H3	한국*력	1	
16	묘도동	산68-6	임	256H2	한국*력	1	
17	묘도동	695-4	임	256H1	한국*력	1	
합계						17	

■ 통신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주번호	소관	수량	비고
1	묘도동	산39-4	도	207	k*	1	
2	묘도동	산39-4	도	206	k*	1	
3	묘도동	산39-4	도	205	k*	1	
4	묘도동	산39-4	도	204	k*	1	
5	묘도동	101-6	임	203	k*	1	
6	묘도동	101-6	임	202	k*	1	
합계						6	

■ 가로등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가로등번호	소관청	수량	비고
1	묘도동	101-6	임	188	여수시	1	
2	묘도동	736-1	임	181	여수시	1	
3	묘도동	101-6	임	186	여수시	1	
4	묘도동	산43	임	185	여수시	1	
5	묘도동	산47-19	임	184	여수시	1	
6	묘도동	691-6	전	179	여수시	1	
합계						6	

■ 수목 및 건축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여수시 묘도동	9*	창고	합석	30	김*근	울산 울주군 온*읍 덕*리 1329-* 동***트 10*-120*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2026년 제1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 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문수2길 10 ~ 문수2길 10-5, 행복마을 입구	편측(41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5. 19..
2	선소로 130-1 ~ 신기북3길 10(공원)	편측(8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5. 19.
3	웅천로 100, 웅천식자재마트 인근	양측(14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5. 19.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6. 4. 28.(화) ~ 5. 18.(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 4. 28.(화) ~ 5. 18.(월) 18:00, 21일간

다. 제출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과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문수2길 10 ~ 문수2길 10-5(행복마을입구)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② 선소로 130-1 ~신기북3길 10(공원)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③ 웅천로 100 웅천식자재마트 인근



위 치 도



현 장 사 진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따라
2026년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일
여수시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5. 4.(월) ~ 2026. 7. 31.(금)

□ 신청장소 : 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필요시 국내거소 사실증명)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선원 승선 사실확인서상의 '확인요청자'는 신청인, '확인자'는 선주(어선의 소유자)이며 선주확인 필요
 - 근로계약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25.1.1.~'25.12.31.기준, 정부24 또는 해경 발급)
- 선적증서 사본 또는 어선원부(택1)
 - 어선원부는 읍·면·동 팩스민원 또는 여수시청(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에서 발급 가능
- 신청인 명의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 요함)
-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
 - ※ 서류 미비 시 이행점검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3.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지급 제외 대상

-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 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접지불금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접지불금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4.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유무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5.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 지침 의거 교육 미수로 및 수산관계법령 미준수 등 지급제한 등의 경우 지원금액 변동 있음

6.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7.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재

-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징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처벌 등 조치

<환수·제재부가금·벌칙 등>

○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 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권한 등의 위임(「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
 -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8. 기타사항 : 본 사업은 2026년 어선원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므로, 세부내용 및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은 필히 지침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	--------	----------------	-----	------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			-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번호	근해어업 허가어선[]								연안어업 허가어선[]								구획어업·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계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확인란에 √ 표시합니다.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확인
-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인
-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	----	----------

<p>신청인 첨부서류</p>	<p>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p>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p>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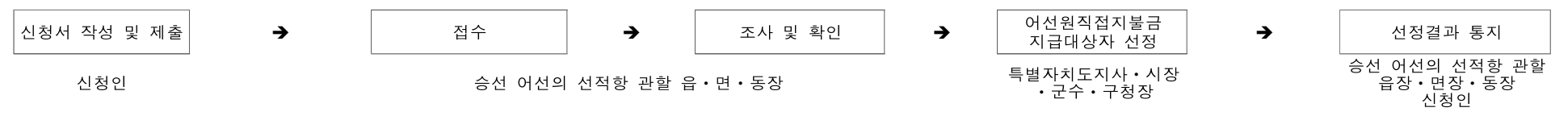
		년	월	일
<p>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p>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신고,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② 어선원 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김다정	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I.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2. 근거 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며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활성화

성과지표	202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 어선원 직불금 지급 비율	00%	-	-	-	-	익년도 1월말	(직불금 지급 어선원 / 직불금 신청 어선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8,499	18,499	18,499	18,499
- 국 비	18,499	18,499	18,499	18,499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2.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지급 제외 대상

-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1차 경고	

사용한 경우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유무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 재 원(지원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고 100%)
- 지원금액 : (직불금) 어선원 당 연간 130만 원, (행정비) 사업 예산의 1.7%
 -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 220목 및 보조인력 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로 사용 금지 (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6. 지급 방법 및 시기

지급 방법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 시기

-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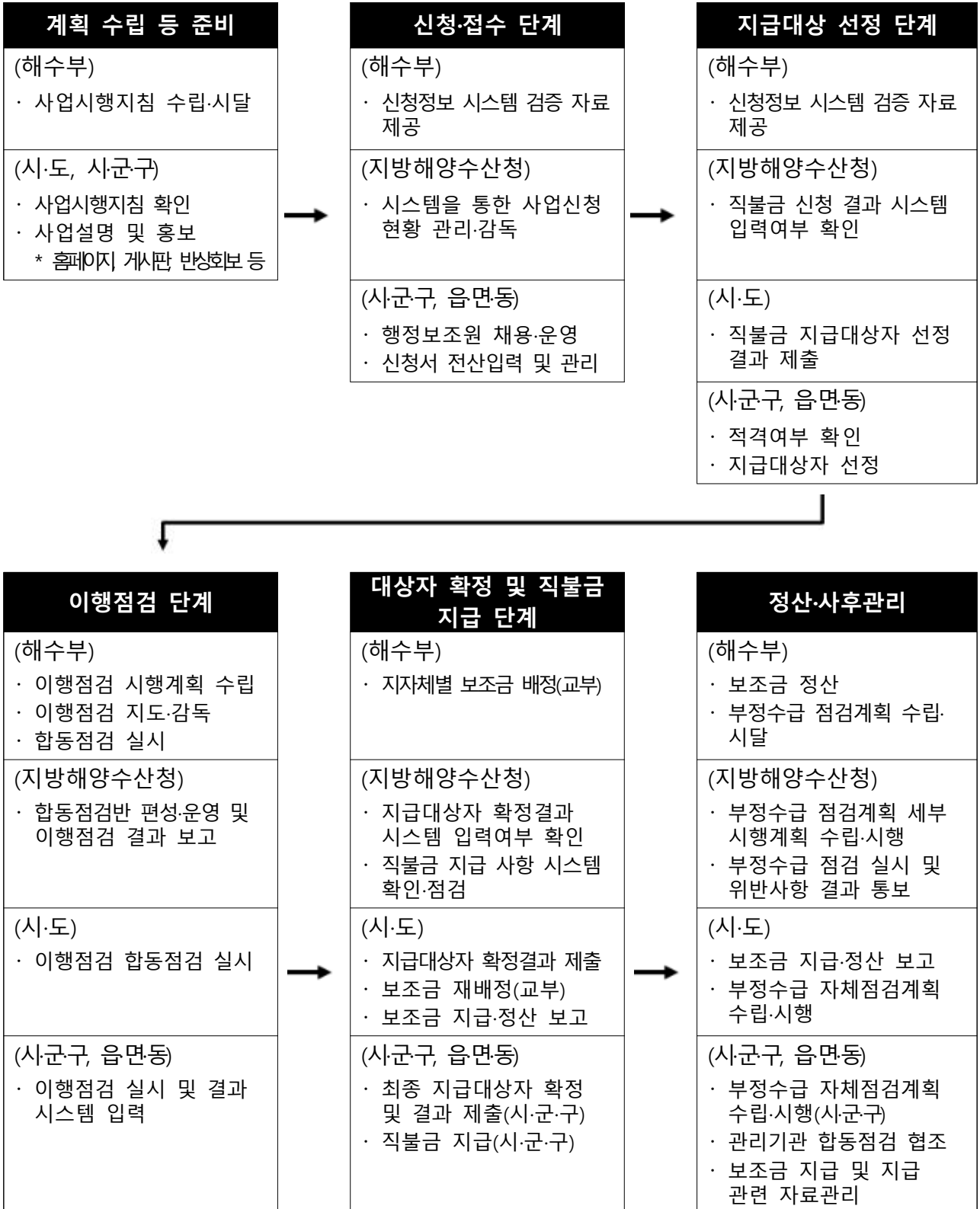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추진 절차



1. 계획 수립 등 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 홍보계획 수립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군·구별 직불금 홍보계획 등 수립·시행
- (시·군·구, 읍·면·동) 어선원 대상 사업 홍보 추진
 -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구 홍보지 등에 공고·게재하는 등 홍보

▶ 공고에 포함할 내용

- ① 어선원 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지원금액, 지급제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어선원 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역 어선의 소유주 및 어선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직불금 신청서 사전배부 및 작성 방법 등 안내

2. 신청·접수 단계

어선원

-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승선·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직불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①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 시,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입항 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읍·면·동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 결과 등을 통해 신청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표상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 적정 여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 등 제출자료를 확인 및 적격여부 검증
 - ① 어선원 승선 어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여부(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등)
 -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항제1호
 - ② 산정기간*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고용계약서)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전산시스템 어선원 입·출항 기록) 여부
 - * 산정기간 : '25.1.1. ~ '25.12.31.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 ③ 신청인 세대 내 중복 신청 여부
 -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④ 그 밖의 직불금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 등

-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 기관간 검증시스템 검증 주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종 제출 전까지 주기적 재확인
 -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 기입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변경 정보 주기적 확인
- 어선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어선원에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신청서 제출에 따라 신청정보 등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 등의 점검 이후 적격 시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절차(지급 대상자 선정 → 이행점검 → 지급 대상자 확정 → 직불금 지급) 안내
-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지급요건 증빙자료 등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보관(5년간)하여야 함
- (공익교육) 개인별 공익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교육 미이수자)에는 읍·면·동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공익교육 실시

시·군·구

-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지원
 - * 보조원 채용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신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시·군·구)
 - 읍·면·동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시·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현황 관리·감독

○ 관할 시·군·구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 지역별 시청·접수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협조 등

▶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업무

- **(신청 어선원)** 직불제 자격요건 검증용 증빙서류 준비, 등록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숙지
 -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전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승선 고용계약서 등 사전준비
- **(읍·면·동)** 어선원 직불제 신청·접수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어선 소유자 단체 또는 어선원 단체 등과 협업하여 업무처리
 -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
 -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의 어선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불제 담당자 및 전산입력보조원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침 별지 제 2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작성·보관
 - 담당자는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 **(시·도, 시·군·구)** 관련 기관(읍·면·동,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 담당자는 원활한 직불제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및 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방해양수산청)** 업무담당자 교육, 어선원 대상 홍보 및 준수사항 이행 독려 등

3.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재검토하고 전산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 제공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신청서류 검토사항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시·군·구

- 읍·면·동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취합하고 신청인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일치 등 지급요건 적격여부 재검토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알려야 함. 다만, 신청인 이의신청에 의한 조치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알리고 기간 조정

*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준한 조치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신청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로 알려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협조의무, 부정수급 시 제재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함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에 제출

지방해양수산청

- 시·도지사가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전산시스템의 입력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지침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게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공익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수산직불제법」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감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확정단계, 지급 등)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관리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점검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등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대상 선정자에 대해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 지급요건 이행점검은 전산시스템(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 관계기관 연계 정보, 해양수산부 제공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수산직불제법」 제19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과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등 현장확인 필요 사항은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어선원 직접지불제 자격요건과 지급요건의 적격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도지사와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 지방해양수산청과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지원
-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등 지급대상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경대상자에 대한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변경대상자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알려야 함
 -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 신청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p>▶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p>○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급요건)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정보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요건검증정보를 활용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관계기관 연계정보 등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적격 여부 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②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③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신청연도 기준 농업공익직접지불금, 임업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④ 그 밖에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기능 교육 이수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수산직불제법」 제19조제3호 이행여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별표 7]이행여부 - (전산시스템 검증결과) 전산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읍·면·동

-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협조·지원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제외(지급요건 위반, 자격이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상에 대한 사유 확인·점검 및 지급대상 제외 알림 조치
- 지급요건 이행점검 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어가 내 어선원 직불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사람이 읍·면·동장에게 사유서와 함께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읍·면·동) 지급대상자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인의 직불금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으로 보고 ○ (시·군·구)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변경신청 보고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으로 통지하고 변경 부적격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으로 통보 - 변경 결정 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대상자)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세대 구성원 중 어선원 직불금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에 적격한 어선원이 변경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변경신청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직불금 지급 불가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 지원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에 적격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지급요건에 적합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최종 입력한 후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도에 보고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지침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와 전산시스템 등을 교차확인하여 전산시스템 미점검 사항 등 미비점에 대해 시·도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

5. 자금배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해양수산부

가. 자금배정 및 교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전수요 조사결과(직전년도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정

- 행정비는 사업 예산의 1.7% 내에서 배정 가능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과 220목으로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어선원 직접지불금 선정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결과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선정자의 지급 제한사항 등을 최종 확인·반영하여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

□ 시·도지사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

○ 정보 공개 방법

- 공개 내용 : 어선원의 성명, 직불금의 종류, 수령액
- 공개 기간 : 직불금 지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공개 방법 :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게시
- 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대상자의 관할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와 직불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징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처벌 등 조치
- 시·도지사는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및 부과 실적을 취합 후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환수·제재부가금·벌칙 등>

○ **부당이득금 환수(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1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제재부가금의 부과(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

-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벌칙(수산직불제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권한 등의 위임(「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
 -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부과·징수

7.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점검계획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추진

-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서면 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도

-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시·군·구청장의 국고보조금(행정비) 집행내역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수급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 부정수급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지침 별지 제7호서식](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부정수급 대상자 최종 확인 및 환수, 국고금 반납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

8.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다음의 사항을 전산시스템과 교차 확인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로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지침 별지 제3호서식]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지침 별지 제5호서식] 보고
 - 보조금 정산 결과 [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보고 : 익년도 1.31.까지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및 사업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선원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① 계획 수립 등 준비 (~4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해양수산부</td> <td>■ 사업시행지침 시달</td> </tr> <tr> <td>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td> <td>■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읍·면·동)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td> </tr> <tr> <td>어선원</td> <td>■ 직불금 지급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증빙자료 준비</td> </tr> </table>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읍·면·동)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어선원	■ 직불금 지급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증빙자료 준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사업시행지침 확인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읍·면·동)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어선원	■ 직불금 지급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 증빙자료 준비								
↓									
② 신청·접수(5~7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어선원</td> <td>■ 신청서 및 요건 증빙자료 등 제출(어선원→읍·면·동→시·군·구)</td> </tr> <tr> <td>지자체 (읍·면·동, 시·군·구)</td> <td>■ 행정보조원 채용·운영(시·군·구)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신청 결과 취합(시·군·구)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td> </tr> <tr> <td>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td> <td>■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td> </tr> </table>	어선원	■ 신청서 및 요건 증빙자료 등 제출(어선원→읍·면·동→시·군·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시·군·구)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신청 결과 취합(시·군·구)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	■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어선원	■ 신청서 및 요건 증빙자료 등 제출(어선원→읍·면·동→시·군·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행정보조원 채용·운영(시·군·구)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신청 결과 취합(시·군·구)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	■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									
③ 지급대상자 예비 선정 및 결과보고(~9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해양수산부</td> <td>■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td> </tr> <tr> <td>지방해양수산청</td> <td>■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td> </tr> <tr> <td>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td> <td>■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신청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협조·지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td> </tr> </table>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신청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협조·지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신청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신청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협조·지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④ 예산(안) 사전 통보 (~9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해양수산부</td> <td>■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td> </tr> <tr> <td>지자체(시·군·구, 시·도)</td> <td>■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td> </tr> </table>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	지자체(시·군·구, 시·도)	■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								
지자체(시·군·구, 시·도)	■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								
↓									
⑤ 이행·점검(8월 ~ 지급 대상확정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해양수산부</td> <td>■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td> </tr> <tr> <td>지방해양수산청</td> <td>■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td> </tr> <tr> <td>지자체 (읍·면·동, 시·군·구)</td> <td>■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시·군·구, 읍·면·동)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td> </tr> <tr> <td>지자체(시·도)</td> <td>■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td> </tr> </table>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시·군·구, 읍·면·동)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	지자체(시·도)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								
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시·군·구, 읍·면·동)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								
지자체(시·도)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								
↓									
⑥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11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해양수산부</td> <td>■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td> </tr> <tr> <td>지자체(시·군·구, 시·도)</td> <td>■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td> </tr> </table>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								
↓									
⑦ 사업정산 (~익년 3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해양수산부, 지자체</td> <td>■ 수령자 자료 관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td> </tr> </table>	해양수산부, 지자체	■ 수령자 자료 관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해양수산부, 지자체	■ 수령자 자료 관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									
⑧ 사후관리 (~익년 4~8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해양수산부</td> <td>■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td> </tr> <tr> <td>지방해양수산청</td> <td>■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td> </tr> <tr> <td>지자체 (시·도, 시·군·구)</td> <td>■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td> </tr> </table>	해양수산부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	지자체 (시·도, 시·군·구)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		
해양수산부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								
지자체 (시·도, 시·군·구)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								

※ 신청서, 지급, 예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보고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별표 및 서식

◆ 「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 [별표 1의2]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 [별표 2]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 보고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 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자료(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제11조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른 면허·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 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들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p>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p>과.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 직접지불금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p>법 제21조 제1항제9호</p>	<p>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p>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			-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번호	근해어업 허가어선[]								연안어업 허가어선[]								구획어업·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계																								

<p>신청인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출항정보 9. 어업면허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입금계좌확인정보 12. 주민등록표 등·초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p>수수료 없음</p>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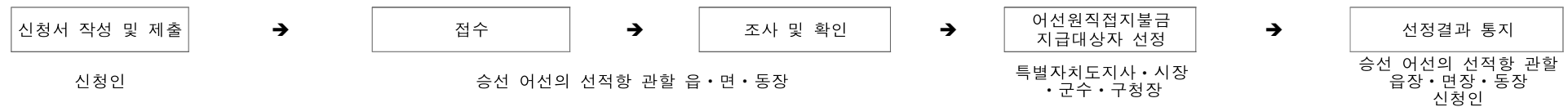
		년	월	일
<p>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p>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 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신고,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인 현황: 총 ○명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번호	시·군·구	읍·면·동	성명	생년 월일	대표어선 어업 종류	대표어선 선적항	연간 승선일수	관련 서류 확인						
								주민등록 등본	승선사실 확인서	어선 출입항 신고 서류	승선어선 관련 서류	어업 경영체등록	어업외 종합소득 관련 서류	기타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번호	시·군·구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사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input type="checkbox"/> 경영이양직접지불금 <input type="checkbox"/>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	--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음장·면장·동장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안서약서

어선원 직불제의 신청·접수, 변경 등록,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어업인, 이·통장,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직불제 신청 접수, 업무대행, 변경등록, 지급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지침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명)

시군별	읍면동별	신청결과					선정결과					미선정 사유							
		어업종류별					어업종류별					선정률 (%)	사유별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b)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c)	승선기간 미충족	소유자·가족 어선원	어가내 중복신청	소규모 조건불리 직불금수령	타부처 직불금 수령	소득제한 미충족
합계																			
00시	소계																		
	00읍																		
00군	소계																		
	00면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정산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합계																
2.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3. 어선원 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

부정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1. 조사결과

- 부정행위 연도 :
- 부정수급 금액 :
- 부정행위 내용 :

2.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부정수급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년 ~ 년)

3. 부정행위 확인 경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기관장 (인)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관리를 위하여 방범용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화장실 앞 및 계단 방면 방범용 등 필요구간에 CCTV 설치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6. 4. 28. ~ 2026. 5. 18.(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공고
6. 설치 예정지

주차장명	위 치	카메라 수량	촬영시간	운영기관
화장동 공영주차장	화장동 795-1번지	1대	24시간	여수시청

7.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2026. 4. 28. ~ 2026. 5. 18.(20일간)
-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61-659-5864)
-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라. 보내실 곳: (우 59674)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 마. 문의 및 안내: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59)
-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예고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결과 공고

「여수 소제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개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3블록
-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박병엽, 이탁기]
 중흥토건(주) [김해근]
- 규모 : 지하5층/지상25층, 아파트 14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추첨가격 및 예정가격

- 추첨가격 : 6, 8, 11, 14
- 예정가격 : 239,257,075원

3. 개찰결과

- 입찰참여업체 : (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등 8개 업체
- 개찰일시 : 2026. 4. 28.(화)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예비순위(상위 3개 업체)
 - 1위업체 : (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정호철]
 - 2위업체 : 주식회사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김장윤]
 - 3위업체 : 주식회사 정구조엔지니어링 [정우정]

4. 행정사항

상위 3개 업체는 본 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2026. 5. 7.(목) 18:00까지 우리 시(허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안전점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 4. 28.

여 수 시 장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4. 29. ~ 2026. 5. 12.(14일간)

2. 제거대상선박 : 1척 (붙임 참조)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18)로 연락바랍니다.

제거대상 선박 내용

관리번호	선명	선질	톤수	방치장소
2026-1	미상	FRP	0.5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42 인근

[별지 제8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6-1423호

방치선박 제거공고

발견장소				
선박 제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적항	미상	톤수	약 0.5톤
	주요치수			
관리청	여수시청	관리번호	제2026-1호	
제거 예정일자	2026년 5월 12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거 방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22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 합니다.

2026.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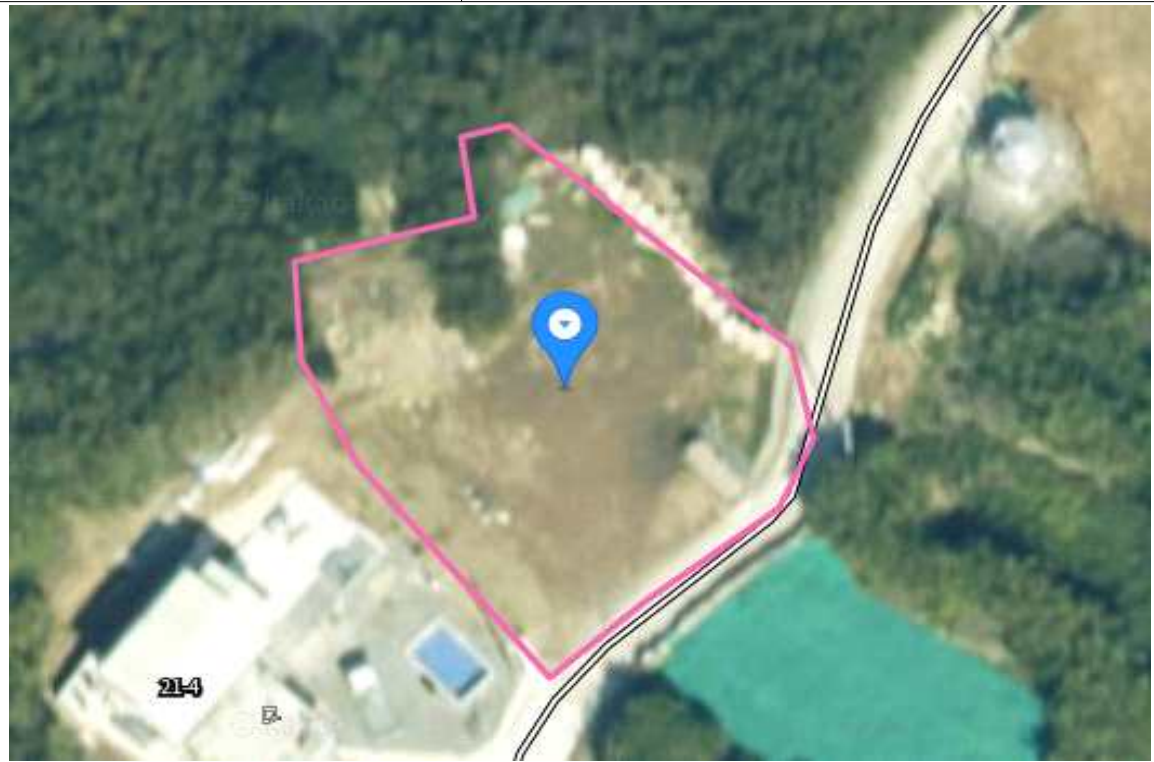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22번지
2. 도로면적 : 25.0㎡
3. 도로길이 : 110m
4. 도 로 폭 : 3.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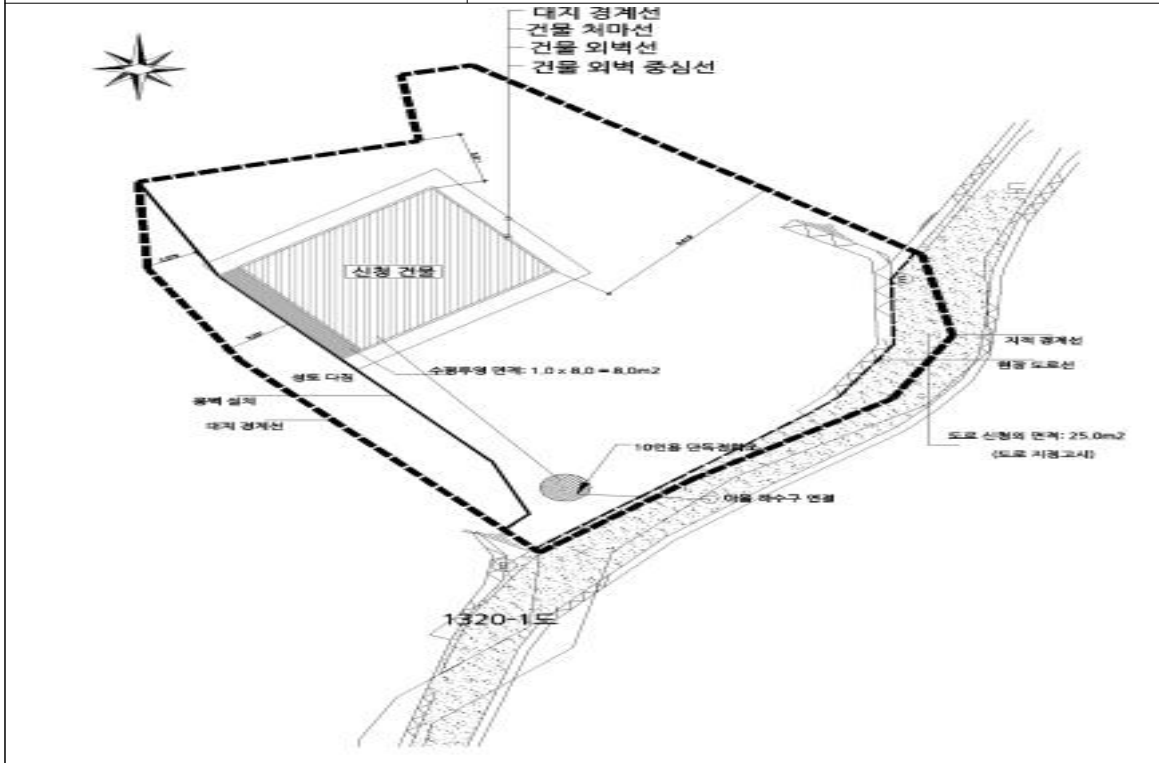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592	25	
삼산면 서도리	1322	전	592	25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위 치 도



현 황 도



공 시 송 달 공 고

2024년도 사업지구(돌산 평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 토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3.(14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사무소 게시관
4. 공고내용: 돌산 평사지구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최 결과 통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6. 4. 29.

여 수 시 장

공시송달 조서

순번	성명	등기번호	발송구분	취급구분	주소	발송일자	배달결과
1	김유선	15008-4600-9324	동산 행사지구 여주시경계결정위원회(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최 경과 통 지	등기	전라남도 순천시 수박동*길 ** ***동 ****호(생목동, 현대아파트)	2026-04-06	반송예담(계문부재)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흑산천)

여수시 공고 제2026-142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허가내역

연 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위치	면적(m ²)	점용사항	점용기간	
1	2026-3	흑산천	(주)승진 엔지니어링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51	소라면 덕양리 1421-42, 569번지	59m ²	자재야적장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 개설	2026. 4. 28. ~ 2030.12. 31.	

여수시 공고 제2026- 1432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양 식 업 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2029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5.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정*은	11057 재개발
12030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4.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정*심	11058 재개발
12031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7.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류*주의 1	11059 재개발
12032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5.0	경호 넓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양*식	11060 재개발
12033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4.0	경호 소경	2026.05.14. 2036.05.13.	여수시 경호동	소경어촌계	11061 재개발
12034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5.0	경호 초도	2026.05.14. 2036.05.13.	여수시 신월동	신월어촌계	11062 재개발
12035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9.0	울촌 봉전	2026.05.20. 2036.05.19.	여수시 소라면 사곡진목1길	유*열	11063 재개발
12036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10.0	울촌 봉전	2026.05.20. 2036.05.19.	여수시 울촌면 봉전리	봉전어촌계	11064 재개발
12037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10.0	울촌 봉전	2026.05.20. 2036.05.19.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반월어촌계	11065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6. 04. 29.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00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2026. 4. 29.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00번지
2. 도로면적 : 17m²
3. 도로길이 : 14m
4. 도로폭 : 3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531	14	
변경	계			1,531	17	
당초	화정면 백야리	200	전	1,531	14	
변경	화정면 백야리	200	전	1,531	17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394호(2025. 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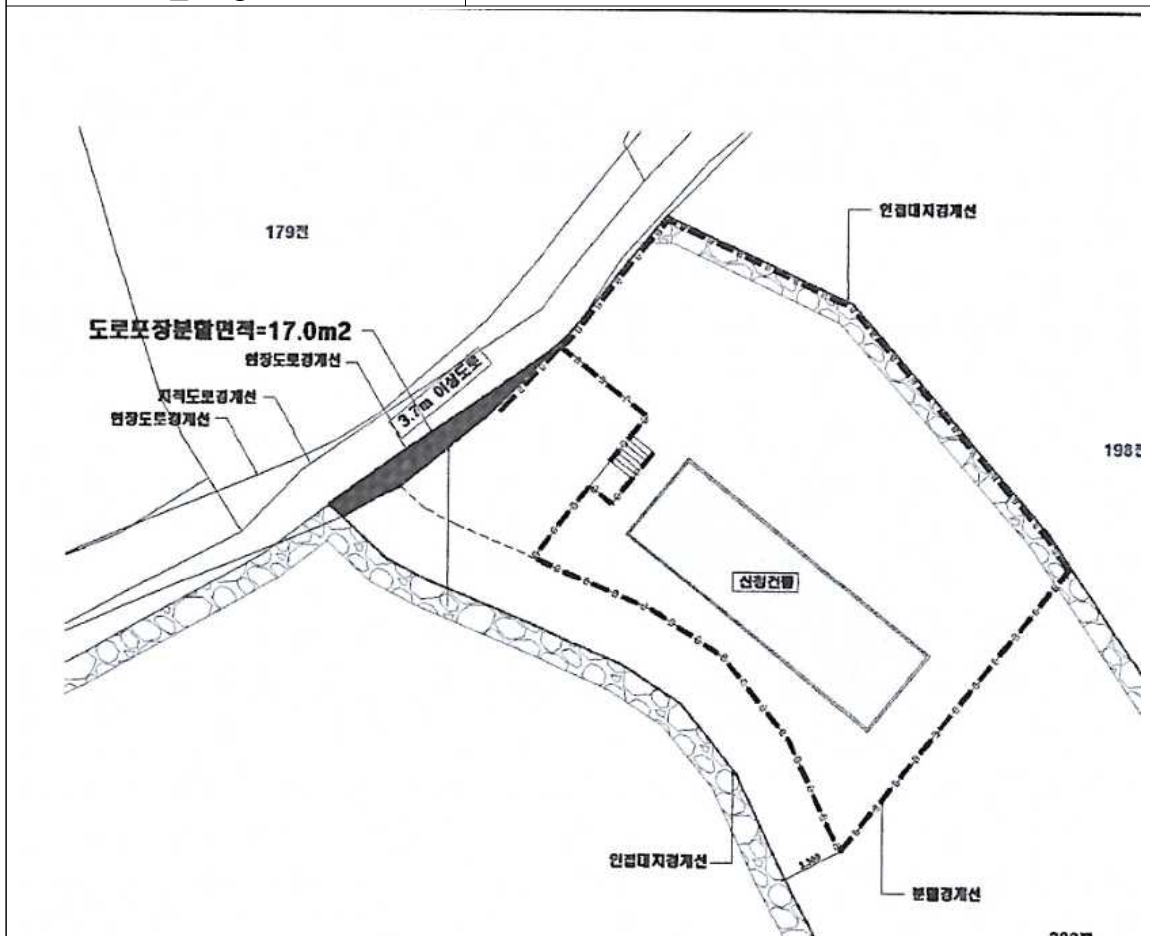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치도



현황도



공 시 송 달 공 고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를 위반하여 여수시 남면 금오도 심포방파제 인근 부잔교에 보관되어 있던 불법 삼중자망 어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해당 어구 소유자께서는 반환신청서와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불법 삼중자망 어구 철거 보관
2. 공고기간: 2026. 4. 30. ~ 5. 14.(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사항
 - 대 상: 삼중자망 어구(10쪽)
 - 신고기한: 공고기간 내
 - 신고기한 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 예정
 - 철거장소: 여수시 남면 금오도 심포방파제 인근 부잔교
 - 보관장소: 여수시 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여수시 신월동 120-46)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061-659-3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보관사진 1부.

2026년 4월 30일

여 수 시 장

불법어구 철거 위치도



철 거 위 치



철 거 위 치

불법어구 철거 및 보관 사진



어구·시설물 반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구·시설물의 품명		
어구·시설물의 규격		
어구·시설물의 수량		
매각 대금(매각한 경우)		
<p>「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3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2제3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어구·시설물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구·시설물의 품명		
어구·시설물의 규격		
어구·시설물의 수량		
매각 대금(매각한 경우)		
<p>위의 어구·시설물을 인수합니다.</p>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p>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여수시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여 수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2명**

- 응시번호 : 무술목 - 1, 방죽포 - 1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6. 5. 7.(목) 14:00
- 장 소 : 돌산읍사무소 회의실 (2층)
-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13:5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함.

4 최종합격자발표

- 2026. 5. 11.(월) 이후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면접시험 개시 1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